



2022년 4월 25일

대한민국의 한-싱가포르 디지털협정 체결에 대한 BSA 의견서

개요

BSA | Software Alliance¹는 최근 실질적으로 체결된 한-싱가포르 디지털협정(이하 “KSDPA”)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의견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BSA는 산업부가 현재 KSDPA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KSDPA의 서명 및 발효에 대한 BSA의 지지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주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KSDPA의 디지털 무역 조항 중 컴퓨팅 시설의 현지화 및 데이터가 국외로 이전되는 것에 대한 제한점을 두는 것을 금지시키는 규정이 추가된다면, 한국 기업들에게 가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2. KSDPA의 컴퓨팅시설 현지화 금지 조항은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 기관과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컴퓨팅 시설 및 데이터의 현지화를 요구한다면 규제의 관리 및 감독에 방해가 되고 보안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서문

BSA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산업의 선두 주자로서, BSA의 회원사들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솔루션, 인공지능(AI) 및 머신 러닝, 사물 인터넷 등 첨단 기술 발전을 통해 세계 경제 성장 및 회복을 견인하고 있는 데이터 기반 혁신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BSA 회원사는 기업 고객들에게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거래 및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흐름을 촉진하는 강력한 정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BSA는 한국이 KSDPA를 실질적으로 체결한 것에 대해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KSDPA는 전향적이고 포괄적인 디지털 경제 협정(이하 DEA)으로서,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범국가적 합의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러한 규칙은 일자리 창출, 경제적 경쟁력 확보 및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스마트 기기 및 기타 신흥 기술과 같은 소프트웨어 기반 혁신에 대단히 중요하며, 성장중인 경제권에서의 기술과 데이터의 변혁적

¹ BSA's members include: Adobe, Alteryx, Altium, Amazon Web Services, Atlassian, Autodesk, Aveva, Bentley Systems, Box, Cisco, CNC/Mastercam, Dassault, DocuSign, Dropbox, IBM, Informatca, Intel, MathWorks, Microsoft, Nikon, Okta, Oracle, PTC, Rockwell, Salesforce, SAP, ServiceNow, Shopify Inc., Siemens Industry Software Inc., Splunk, Trend Micro, Trimble Solutions Corporation, Twilio, Unity Technologies, Inc., Workday, Zendesk, and Zoom Video Communications, Inc.

역할과 광범위한 산업에 걸친 경쟁력 증대를 반영합니다. 상술한 이유들로 BSA는 KSDPA와 같은 디지털 무역 협정의 체결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KSDPA가 한국 기업에 가져다 줄 혜택

한국은 세계에서 디지털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² 2018년 기준 15억 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의 공용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2023년에는 31억 달러로 2배가량 성장해 국민총생산 450억 달러와 5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를 방증합니다.³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게임업체 등 디지털 기반 산업이 한국의 디지털화의 주요 동력원이지만, 소매업체 및 대기업들이 디지털 부서를 지원하고, 나아가 국제적인 사업 확장을 추진함에 따라 이들 역시 한국의 디지털화의 주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⁴ 실제로, 의료 및 제조업부터 농업과 소매업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기술은 기업의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과 수출,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생산성 향상, 신규 고객 개발, 공급망 관리 및 연구 개발 진행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⁵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연결성이 경제 활동, 일자리 창출, 사회 복지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무역 장벽이 강화되고 디지털 보호무역주의가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약 80여 개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수출 및 기타 무역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했으며, 국경 간 데이터 및 정보 이동을 제한하는 디지털 무역 장벽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⁶

특히 데이터 저장 위치를 철저히 자국 내로 한정하여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외이전을 제한하는 규제는 디지털 무역 장벽 중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현지화는 불필요한 비용 및 불확실성을 발생시켜 사업과 투자를 저해하며,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디지털 무역 장벽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국내 기업의 혁신 기술 접근을 제한하여 국제 공급망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것
- 국내 기업의 데이터 분석을 제한하여 AI 및 머신 러닝 등 대규모 데이터에 의존적인 신기술의 개발 및 투자를 저해하는 것
-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가공 및 보관 시설 사용을 제한해 막대한 불필요 비용을 발생시켜 투자 및 연구개발 대상국으로서의 한국의 매력을 저해하는 것
- 관계국 간 상호 운용이 불가능한 법률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방해하는 것

KSDPA는 데이터 이전 및 현지화에 대한 규범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합니다.

- 제 14.14 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이 적용대상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일 경우, 어떠한 당사국도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² Korea has topped the Bloomberg Innovation Index for seven of the last nine years. See: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2-03/south-korea-leads-world-in-innovation-u-s-drops-out-of-top-10?sref=d8oB8qmA>.

³ BCG, “Ascent to the Cloud: How Six Key APAC Economies can Lift-Off”, October 2019, https://web-assets.bcg.com/img-src/Ascent_to_the_Cloud_Report_21Oct_tcm9-231826.pdf (BCG Report).

⁴ BCG Report (2019).

⁵ Global Data Alliance, “Jobs in every sector depends upon data flows”, March 2020, <https://globaldataalliance.org/wp-content/uploads/2021/07/infographicgda.pdf>.

⁶ World Trade Organisation Report 2021, https://www.wto.org/english/res_e/booksp_e/wtr21_e/00_wtr21_e.pdf

- 제14.15조 (컴퓨터 설비의 위치)는 KSDPA의 당사국이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적용대상인에게 그 영역에서 컴퓨터 설비를 사용하거나 둘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KSDPA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부가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 금지:** KSDPA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를 포함하여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역 비용을 증가시키고 기업의 국경을 초월한 지식 및 디지털 도구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여 기업에 해가 되므로, BSA는 KSDPA의 이와 같은 입장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 **전자서명, 전자인증, 전자계약, 전자 송장 및 디지털 신원 틀에 대한 상호간 인정 및 상호운용성 수립:** 위 조항들은 불필요하고 시대에 뒤쳐진 과정을 줄임으로써 디지털 무역 장벽을 무너뜨릴 중요한 조항들입니다. 아울러 이 조항들은 국내 개인 및 기업들이 싱가포르의 고객 및 파트너와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체제의 상호운용성:** 개인정보와 보안은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며, 국제적 상호운용성은 소비자 및 기업 모두에게 안전한 디지털 거래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 **소스코드에 대한 접근 및 공개 금지:** 기업들은 제품의 수입, 유통, 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조건으로 제품의 소스코드의 공개, 이전 및 접근을 요구 받지 않게 됩니다.
- **데이터 혁신을 위한 협력:** 한국과 싱가포르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데이터 공유 프로젝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며,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제공되는 기회를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습니다.
- **공개된 정부 데이터:** BSA는 공개된 정부 데이터에 대한 조항을 추가할 것을 권고합니다. 정부가 생성한 데이터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경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데이터 현지화 우려

KSDPA는 국경 간 데이터 전송 및 컴퓨터 시설 위치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칙을 제공하지만, “금융기관” 또는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데이터 현지화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⁷ 즉, 싱가포르의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는 한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에 컴퓨팅 설비를 위치시키거나 한국의 컴퓨팅 설비를 사용해야 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BSA는 금융 규제 당국이 관리 감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거래 및 운영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포함하여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정보에 대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을 요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⁸ 금융데이터가 국외에 저장될 경우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는 금융 규제 당국의 공통된 우려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현지화는 금융데이터에 접근 권한을 유지하려는 금융 규제 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다만, 데이터 현지화 조치는 보안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악성 행위자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 보안의 중요성 역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공격이 치명적일 수 있는 금융 부문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현지화 조치는

⁷ KSDPA, Article 14.15 (4).

⁸ KSDPA, Article 14.16 (2).

대부분의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해당 국가의 데이터 저장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강제합니다. 현지의 데이터 저장 서비스 공급자는 사이버 보안 기능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고 최신의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보안 프로그램 및 제어 기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글로벌 업체와 동일한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현지화로 보안 위협 사례를 사이버 보안 회사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업로드하는 것이 지연된다면 해당 지역의 고객이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위협에 노출되어 해당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권 간의 정보 공유가 제한되어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대응하는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규제 당국의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금융 부문의 데이터 현지화 역시 규제 감독을 위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계화된 경제에서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 제공자는 범국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로 인해 매일 상당한 양의 국경과 대륙을 초월한 데이터 흐름이 발생합니다.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국외 컴퓨터 시설에서 가공되고 저장되는 정보에 대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접근 권한을 취득하는 등, 규제당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의 저장 위치에 관계없이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로부터 필요한 데이터에 대해 접근 권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규제 당국이 데이터에 대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접근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데이터 현지화를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BSA는 싱가포르가 호주와 영국과 체결한 DEA에서 채용한 다음과 같은 접근 방식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 싱가포르-호주 DEA 제 25 조 2 항에 따르면, 금융 규제 당국이 국외에 위치한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사용 중인 컴퓨터 시설에서 처리되거나 저장된 정보에 대해 “즉각적이고 직접적이며 완전하고 지속적인 접근”이 가능할 경우 어떤 당사국도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컴퓨터 시설 및 데이터를 현지화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영국 DEA는 당사국이 “금융 규제 및 감독 목적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적절한 접근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만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데이터 현지화를 요구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영국 자유무역협정 제 8.54 조를 개정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또한 데이터 현지화를 시행한 당사국에게 (1)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2) 데이터 현지화를 시행하기 전에 상대국의 규제 당국과 협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 데이터 연결성에 관한 미국-싱가포르 공동 성명서⁹ 역시 유용한 참고 자료입니다. 양국은 다음과 같은 비구속적 합의를 채택했습니다.

-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이라면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전자적 수단에 의해 국경 간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금융 규제당국이 규제 및 감독에 필요한 데이터에 완전하고 시의적절한 접근이 가능한 한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가공할 수 있는 위치를 제한하는 조치를 금한다.
-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컴퓨터 시설을 자국 내에서 이용하도록 요구하기 전,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BSA는 한국이 향후 체결하는 DEA에서 싱가포르-호주 및 싱가포르-영국 DEA가 설정한 최고 수준의 규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BSA는 또한 한국의 금융 규제 당국이 향후 KSDPA의 개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싱가포르의 금융 규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⁹ United States-Singapore Joint Statement on Financial Services Data Connectivity, February 2020, <https://www.mas.gov.sg/news/media-releases/2020/usa-singapore-joint-statement-on-financial-services-data-connectivity>

결론

다시 한번 싱가포르와 성공적으로 KSDPA를 체결한 것에 대해 산업부와 한국 정부에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BSA는 디지털 무역에서의 국제 규범을 발전시키기 위한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본 의견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설명이나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shenhongt@bsa.org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m Shen Hong

Tham Shen Hong
Manager, Policy – APAC